

Anti-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Policy
for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현대건설 노예제 및 인신매매 금지 규정

1. **FORWARD 서문**

- 1.1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the "Company") maintains relationships with many different organisations in its supply chain as well as directly employing large numbers of employees for its business in multiple jurisdictions. The Company has a zero-tolerance approach to modern slavery both within the Company and within its supply chain.

현대건설 (이하 "회사")는 여러 국가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임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조직 (인력파견 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 등 현대건설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자, 이하 "공급망")과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와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급망 내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합니다.

- 1.2 The Company's Human Rights Policy states that it respect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olicy applies to all of the Company's operations and employees. The Company expects equivalent standards of conduct from its supply chain.

회사의 인권 규정은 회사가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유엔 세계 인권 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유엔 사업 및 인권 지침'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규정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공급망 내 위치한 모든 거래상대방이 본 규정과 동등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1.3 Modern slavery is a criminal offence in certain jurisdictions where the Company operates, and it can have extremely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Company, and potentially for the employees involved. Every employee has a duty to comply with this policy. No one at the Company has the authority to give any order or direction that would result in a violation of this policy.

현대판 노예제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여러 국가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발생 시 회사는 물론 연루된 임직원에게 형사처벌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그 누구도 이 규정을 위반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 1.4 This "Anti-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Policy" is designed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on

이 "노예제 및 인신 매매 금지 규정"은 다음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i) what anti-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mean to us

노예제와 인신 매매 금지의 의미,

(ii) why it is essential that we comply with them; and

우리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

(iii) how to comply with this policy in practice

실무적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 1.5 Human Resources Management Team and Compliance Team are available to help you. Please ensure that you seek advice whenever you feel that a certain course of action may involve the breach of this policy. If you become aware that a particular practice is taking place which may infringe this policy, it must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Company. Please refer paragraph 4.2 for having consultation and/or reporting on this issue.

회사 인사실 인력운영팀과 법무실 준법지원팀에게 연락하여 본 규정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구하십시오.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문 및 신고 창구는 본 규정 4.2 조 기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WHAT IS MODERN SLAVERY? 현대판 노예제는 무엇인가?**

- 2.1 Slavery is holding a person in slavery or servitude or forcing a person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Human trafficking is arranging or facilitating the travel of another person with a view to him/her being exploited, regardless of consent to the travel.

노예제는 사람을 노예나 노예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제 노동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신 매매는 상대방이 착취당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그(녀)의 거주지역을 이동시키는 여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2.2 Modern Slavery is an umbrella term. It encompasses, amongst others, the risks posed, indentured labour, debt servitude, risks associated with migrant labour and human trafficking, where coercion, threats or deception are used to intimidate, penalize or deceive workers, thereby creating situations of involuntary work and exploitation. Modern Slavery may also be associated with the worst forms of human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labour.

현대판 노예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협 등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기망 행위를 통해 개인의 비자발적 노동을 강제하거나 착취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여하한 행위, 도제계약노동, 채무변제 조건의 무상 노동, (불법) 이주 또는 인신 매매 행위가 구체적으로 개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는 아동 노동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인간 착취 행위를 포함합니다.

- 2.3 The Company is committed to ensure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is not present not only in any part of its business but also any of its supply chains. The Company's supply chain includes suppliers of raw materials and machinery, subcontractors, security, cleaning, catering contractors, IT providers, transport/logistics contractors, outsourced labour suppliers, search firms, suppliers of office equipment and joint venture partners.

회사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인신 매매 행위가 회사의 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급망이란, 원자재 및 장비 공급 업체, 공사 하도급 업체, 기타 용역 (보안, 청소, 음식 공급, 인력파견, 헤드헌팅, 사무용품 공급 등) 업체, IT 업체, 운송/물류 계약 업체 및 합작 투자 파트너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2.4 More vulnerable groups include women, children, migrant workers and indigenous peoples.

(보호가 필요한) 더 취약한 집단에는 여성, 아동, 이주 근로자 및 원주민이 포함됩니다.

- 2.5 In some countries, local laws impose additional obligations on the Company regarding compliance with human trafficking,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laws. For example, it may be required for

the Company to (i) implement certain measures, such as specific clauses in the agreements with third parties, (ii) make disclosures to the government that human trafficking,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are not occurring at the Company or within its supply chain, and (iii) reporting activity to the government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se laws.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법률이 인신 매매,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법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i) 제 3 자와의 계약상 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를 해야하고, (ii) 회사 또는 공급망 내에서 인신 매매,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에 공개하고, (iii) 이러한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A. Forced Labour 강제 노동

- All work must be conducted on a voluntary basis, and not under threat of any penalty or sanctions.

모든 근로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Workers should not be required to make deposits/financial guarantees/payments to employers, outsourced labour suppliers or search firms to obtain work.

근로자는 회사와 관련된 일자리를 얻는 조건으로 고용주, 인력파견 업체 또는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예금/재정보증/지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 Original copies of identity documents (such as passports, identity cards, etc.) must not be retained for forced labour.

회사는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신분증 원본 (여권, 신분증 등)을 수거하여 제 3 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Bonded/indentured labour is prohibited. Workers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ir employment after reasonable notice and to receive all owed salary. We must respect the right of workers to leave the workplace after their shift.

도제계약노동, 채무변제 조건의 무상 노동은 금지됩니다. 근로자는 합당한 통지 후 고용을 종료하고 모든 미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 후 퇴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There must be no forced, bonded or involuntary prison labour.

도제계약노동, 채무변제 조건의 무상 노동 또는 감금 등 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구속은 금지됩니다.

B. Child labour 아동 노동

- Must not employ workers who are younger than

우리는 아래의 기준에 미달한 연령의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 i. the legal minimum age for employment applicabl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or

해당 국가의 관할법이 규정한 법적 최저 고용 연령; 또는

- ii. the age of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해당 국가의 의무 교육 수료 연령

- Must implement robust age verification checks at all times.

우리는 항상 강력한 연령 확인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Must not recruit child labour nor exploit children in any way. If children are found working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Company or its supplier, a remediation plan should be implemente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irst, and to enable the child to access appropriate education until no longer a child.

여하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모집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아동이 회사 또는 회사의 공급망 내 특정 업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먼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발 방지대책이 해당 업체에서 실행하되, 그 아동이 법정 근로 연령이 될 때까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Young workers are protected against hazardous jobs, night shifts and are ensured minimum wages. Limits for working hours and overtime should be set with special consideration to the workers' young age.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이나 밤샘 근무로부터 우선 보호되며,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초과 근무 시간의 제한 여부를 설정해야 합니다.

C. **Human Trafficking** 인신 매매

- The Company should not engage in any act of recruiting, harbouring, transporting, providing or obtaining a person for forced labour or commercial sex acts through the use of fraud, coercion (e.g., threats of serious harm or physical restraint or abuse or threatened abuse of the legal system) or deception.

사기, 강압 (예: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제약을 가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법률 시스템의 남용에 의한 위협), 속임수를 사용하여 강제 노동 또는 성매매를 위한 사람을 모집, 고용, 수송, 제공 또는 확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D. **Supply Chain Monitoring** 공급망 모니터링

In order to ensure that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ompany's supply chains, it should:

회사 공급망 내에서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면:

- conduct risk assessments to determine which parts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which of its suppliers are most at risk of modern slavery so that efforts can be focused on those areas.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어느 부분과 공급망 내 업체가 현대판 노예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러한 영역에 모니터링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ngage with the Company's suppliers both to convey to them its Anti-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Policy and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measures taken by them to ensure modern slavery is not occurring in their businesses and their supply chain.

공급망 내 업체에 회사의 현대판 노예제 및 인신 매매 금지에 관한 본 규정을 전달하고, 그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 매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 introduce contractual provisions for the Company's suppliers to confirm their adherence to this policy and accept the Company's right to terminate its dealings with the suppliers in case of violation.

공급망 내 업체가 회사의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래 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계약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3. CONSEQUENCES OF BREACH 위반의 결과

3.1 If the Company is investigated for a potential breach of modern slavery or equivalent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s, this will result in:

회사가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 매매와 연루될 경우 현지 법률 및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 **Publicity and scrutiny:** investigations for breaches of these rules can result in adverse publicity for the Company and closer scrutiny of the Company's activities by regulators in subsequent years.

언론 보도 및 정부기관 조사 및 수사: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 조사 및 수사는 회사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촉발하여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정부 기관이 회사 활동을 면밀히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b) **Claims for damages:** certain countries (of which the UK is an example) permit third parties that suffer losses as a consequence of an infringement of these rules to bring proceedings for damages as a result of breach of these rules, as well as being able to obtain interim relief - such as an injunction to stop specified conduct from continuing.

제 3 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특정 국가 (예: 영국)는 본 규정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 3 자가 회사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사의 위반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에 대한 가처분 (예: 특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c) **Costs of defending an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legal costs, investigations cause significant disruption to business and place considerable demands on management time.

정부 조사/수사 대응 비용: 본 규정 위반행위는 노동법을 비롯한 현지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및 내부조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 (d) **Black listing/Event of Default(EOD):** a significant additional risk of breach of modern slavery laws is the black listing of the Company from publicly tendered work and the risk of the Company being prohibited to bid for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financed projects for a period of time. The Company may also be exposed to EOD risk in existing projects.

블랙리스트 등재/EOD: MDB (다자간 개발 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은 회사가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행위에 연루된 경우 자체 조사 및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MDB 가 자금을 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가 일정기간 금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하여, 이미 회사가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대출 계약 (Loan Agreement) 상 중대한 계약위반 (EOD)에 해당하여 시공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3.2 If an issue is identified with a supplier, the Company will work with them to prepare a corrective action plan and resolve all violations within an agreed upon time period.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it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in its supply chain if they breach this policy.

공급망 내 업체에서 관련 문제가 확인되면 회사는 그들과 협력하여 시정 조치 계획을 준비하고, 합의된 기간 내에 모든 위반 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회사는 본 규정을 위반한 공급망 내 업체 또는 개인과의 여하한 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3 The Company takes this policy very seriously and violations may lead to disciplinary action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The Company retains discretion as to how to respond to any violation of this policy in accordance with all applicable local laws and the Company's HR regulations.

현대건설의 모든 임직원들은 본 규정이 현대건설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위반 행위 시 사내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현지법과 회사의 제 규정에 따라 본 규정 위반 행위에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 **CONSULTATION, REPORT AND WISTLEBLOWING PROTECTION**

상담, 위반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4.1 If you have a concern about any issue that you believe or suspect may violate any law or violate this policy, you must report such issue to the Company as soon as possible. All employees are also encouraged to raise concerns about any modern slavery in any parts of the Company's supply chains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회사의 임직원은 노동 관련 법률과 규정 또는 본 규정 위반에 관한 의심이 있거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 및 공급망 내 업체에서 발생한 본 규정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도 즉시 회사에 신고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4.2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cerning this policy or would like further guidance on this issue, please contact the Company via website: [https://elaw.hdec.co.kr/AnonymousBoard/CompBoard_SSO.aspx], email [*].

본 규정 이행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문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웹사이트 [윤리 · 준법 상담센터]: [https://elaw.hdec.co.kr/AnonymousBoard/CompBoard_SSO.aspx]

이메일: [인력운영팀 담당자 이메일]

4.3 You can make a report of any violation of this policy via website: [<http://audit.hdec.kr/auditStart.asp>]

본 규정 위반 행위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웹사이트 [사이버 감사실]: [<http://audit.hdec.kr/auditStart.asp>]

4.4 All reports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will be dealt with appropriately. You will not experience retribution or retaliation for a complaint made in good faith. The Company is committed to ensuring no one suffers any detrimental treatment as a result of reporting in good faith their

suspicion that modern slavery of whatever form is or may be taking place in any part of its business or in any of its supply chains. Detrimental treatment includes dismissal, disciplinary action, threats or other unfavourable treatment connected with raising a concern. If any employee believes that they have suffered any such treatment, they should report in accordance with Whistleblowing Policy and Procedure immediately.

본 규정 위반에 대한 모든 신고는 기밀로 유지되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선의에 기하여 회사에 제기 된 신고에 대한 응징과 보복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는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여하한 부당 대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해고를 포함한 인사상 징계, 신고 사실에 근거한 위협 등 기타 불리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현대건설 내부자 고발 규정**에 따라 즉시 회사에 신고하기 바랍니다.